

## 2019년 전기택시 사업자(개인·법인)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택시업계 경영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택시를 운영할 택시 운송사업자(개인 및 법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5. 31.

서울특별시

###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총 3,000대(개인택시 1,500대, 법인택시 1,500대)
- 보급기준 : 개인택시 1인 1대, 법인택시 1개사 최소 5대 이상
- 지원금액 : 차량 1대당 1,800만원(국·시비 각 900만원)
- 보급차량 : 총 4종
  - 기아(니로EV, 쏘울 부스터EV), 현대(아이오닉EV, 코나EV)
  - 양 택시 조합에서 제안서 접수 및 선정 심사를 통해 선정된 위 4개 차종에 한해 전기택시 보조금 1,800만원 지급

#### 〈전기택시 보급차량〉

제작사	차종	주행거리	배터리	
			용량	보증조건
현대	아이오닉EV	271km	38kWh	10년 20만km 보증
현대	코나EV	406km	64kWh	
기아	니로EV	385km	64kWh	
기아	쏘울 부스터EV	386km	64kWh	

※ 주행거리 및 배터리 용량은 항속형 기준

## 2.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기준

- 신청대상 : 서울시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자
  - 2018년 전기택시 보급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선정 제외
- 선정대수 : 총3,000대(개인택시 1,500대, 법인택시 1,500대)
  - 신청 결과 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 중 한쪽이 초과 신청되고, 동시에 다른 한쪽이 신청 미달될 경우, 추가 공고 없이 미달분은 초과 신청된 사업자쪽으로 분배함
  - 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선정 대상자가 선정일 기준 3주 이내 구매계약을 하지 않는 등 중도에 포기할 경우 예비자의 순번에 따라 보급대상 기회부여
- 선정기준 : 총 신청대수가 3,000대를 초과할 경우 정량평가에 따른 고득점 순서에 따라 선정
  - 개인택시 : 심야운행 일수, 민원신고 건수, 남은 차량, 운행거리에 따른 점수 산정
  - 법인택시 : 1인당 민원, 교통사고 건수, 배분율, 전기택시 운영대수(신청일 기준)

## 3. 차량구매 보조금 및 운영지원

- 차량구매 보조금 : 대당 1,800만원(국·시비 각 900만원)
- 충전기 설치
  - 비공용·완속 충전기 기당 최대 130만원 지원
    - ▶ 완속 충전기 보조금은 자동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https://ev.or.kr>) 참조
  - 법인택시 급속 충전기 설치
    - ▶ 공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 기후대기과에서 별도 공모하는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참여로 설치  
(50kW 기준 1,000만원 지원 예정, 택시 포함 민간 50기 한정)
    - ▶ 보급차량 제작사에서 선정한 충전업체와 협의로 설치  
(차종선정 및 심사시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충전업체에서 제시한 구매 대수별 차등, 계약 세부조건 등은 각 자동차 제작사에 문의)

○ 차량도색 및 디자인: 별도 예산지원 없음

- 별도의 지정 디자인(추후 통보)에 따라 보급대상자가 전기택시 홍보스티커 부착

〈전기택시 색상규정〉

- 택시 색상은 서울 중형택시 색상 규정 적용(기존 전기택시 하늘색도 허용)
  - 개인택시 :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 하늘색 / 법인택시 : 꽃담황토색, 하늘색 (단, 전기택시라도 모범, 대형택시는 검은색, 관광택시는 꽃담황토색 적용)
  - 이외 색상(회색 계열, 기존 하늘색과 다른 푸른색 계열 등) 적용 불가

※ 법인택시 사업자가 쏘울 부스터EV 구입시 기아자동차에서 해당 차량 도색비 100만원 지원(기아 니로EV 꽃담황토색 생산 '19년 9월 예정)

**4.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9. 6. 3.(월) 09:00 ~ 2019. 6. 14.(금) 18:00

○ 접수장소 : 개인택시 지부 및 법인택시 조합

- 개인택시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각 지부(☎02-2084-6300)
- 법인택시 :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02-2033-9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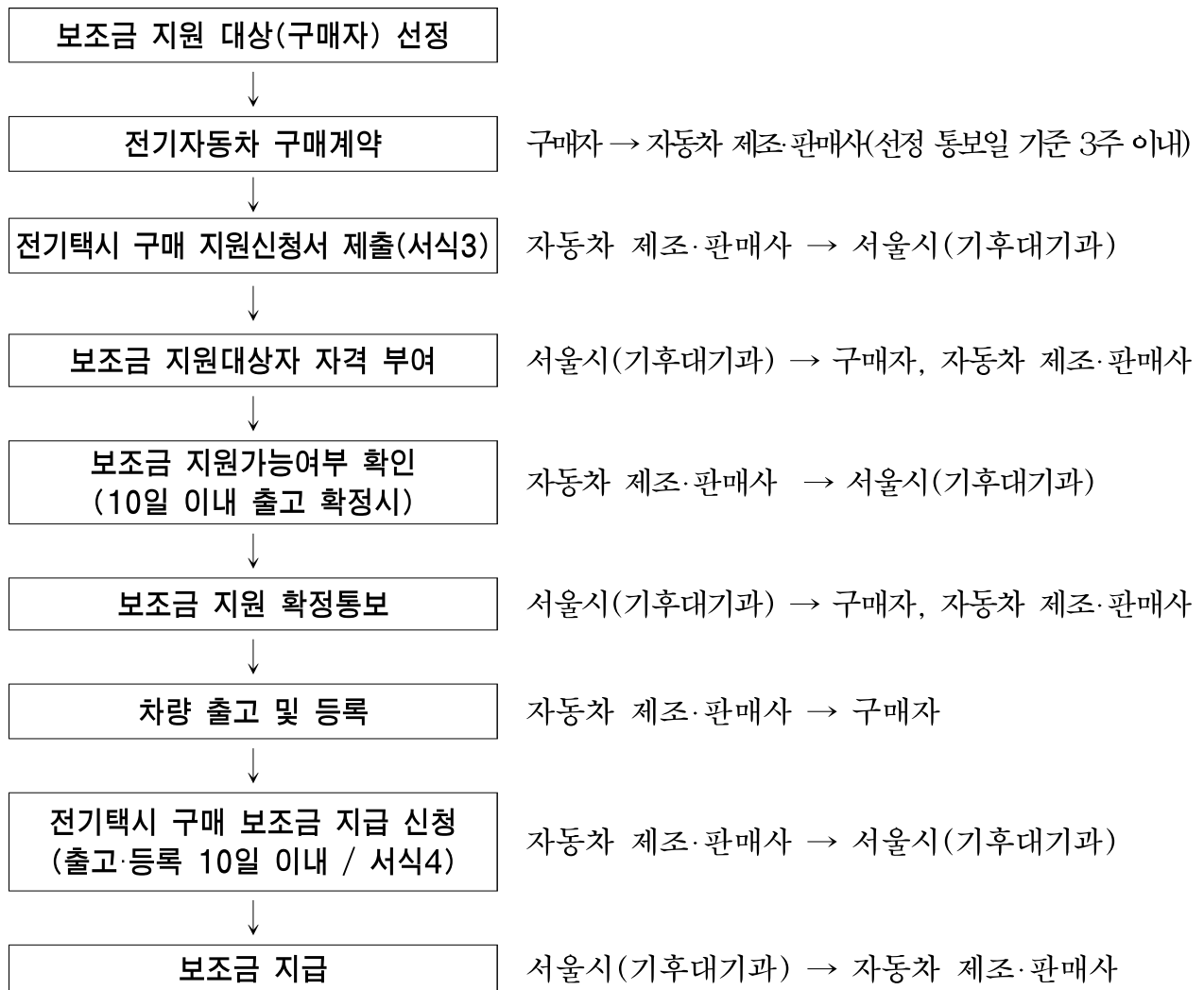
**5. 제출서류**

○ 전기차 구입 계획서 -----(개인택시 서식 제1호, 법인택시 서식 제2호)

**6. 보급일정(안)**

절 차	기 간	세부내용
① 공고 및 접수	6/3 ~ 6/14	□ 양 택시조합 접수 ※ 6/19(수)까지 택시물류과로 신청서류 송부
② 대상자 선정 (개별통보)	6/20 ~ 6/26	□ 신청대수가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절차 진행
③ 차량인도, 도색, 장비 설치 등	10/31 까지	□ 도색, 미터기, 카드결제기, 콜장비 설치 등

## 7.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 8. 특이사항 및 준수사항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일 3주 이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19년 서울시 전기택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차량구매에 따른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기택시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택시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시 사전 판매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 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이 인계되고 구매자는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을 택시로 운행하여야 함
-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 시에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택시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시장에게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

※ 의무운행기간, 폐배터리 반납 관련 절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2019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 9. 기타 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및 양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서울시 택시물류과, 기후대기과에서 시행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전기택시 보급 관련 문의처〉

기 관	주요 역할	연 락 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문의	02-3473-1221 (내선 1149 또는 1243)
서울시 물류과	전기택시 보급 관련 민원상담(총괄)	02-2133-2314
서울시 대기과	전기택시 보급 관련 민원상담(보조금 지급)	02-2133-3642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기택시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안내(개인)	02-2084-6300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기택시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안내(법인)	02-2033-9221

〈제작사 문의처 -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

제 작 사	연 락 처	제 작 사	연 락 처
기 아 자 동 차	080-200-2000	현 대 자 동 차	080-600-6000

**[별표]**

제1호 전기택시 실구매가격

**[별지 서식]**

제1호 전기차 구입 계획서(개인택시)

제2호 전기차 구입 계획서(법인택시)

제3호 2019년 서울시 전기택시 구매 지원신청서

제4호 2019년 서울시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 전기택시 실구매가격(택시사업자 부담 금액)

(세금 면제, 보조금 수령시 부담액)

제작사	차종		(개인택시) 영세 실구매가격	(법인택시) 면세 실구매가격
현대 자동차	아이오닉EV	N	1,963만원	2,340만원
		Q	2,236만원	2,640만원
	코나EV(향속형)	택시 전용	2,359만원	2,775만원
		모던	2,427만원	2,850만원
		프리미엄	2,609만원	3,050만원
기아 자동차	니로EV(향속형)	택시 전용	2,455만원	2,880만원
		프레스티지	2,545만원	2,980만원
		노블레스	2,728만원	3,180만원
	쏘울 부스터 EV(향속형)	택시 전용	2,318만원	2,730만원
		프레스티지	2,409만원	2,830만원
		노블레스	2,591만원	3,030만원

1. 위 가격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면제하고, 전기택시 보조금 (1,800만원)을 수령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가격으로 이후 정부의 세금 정책 등이 변동될 경우 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
2. 기아자동차에서 니로EV 구입시 대당 30만원, 쏘울 부스터EV 구입시 대당 50만원 충전카드 제공
3. 현대자동차에서 개인택시 사업자가 코나EV 구입시 대당 30만원, 아이오닉 EV 구입시 대당 50만원 차량가격 할인 제공
4. 현대자동차에서 법인택시 사업자가 코나 EV, 아이오닉 EV 구입시 차량가격 50만원 할인 및 정책부품 대당 50만원 별도 지원 제공









### 전기택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택시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전기택시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차종 변경 가능함
- 동일 개인에게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서울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 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이 인계되고 구매자는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을 택시로 운행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배터리를 서울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서울시가 해당 전기차 제작사로 지급함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